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의뢰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지원 내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2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유통시스템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사항
10. 자영업자 주간 등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화폐, 문화행사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
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경제수도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시의회 의원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3. 시민단체의 대표
4.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
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사안 발생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사항
4.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상권 동향조사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권 동향조사·분석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중소상인관련 정책정보 제공) 인천광역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 운영 및 개별 사업수행
- 관 련 조 문 : 안 제2조~안 제5조, 안 제7조~안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개별 사업수행

나. 추계 결과 : 총20,242백만원

-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1식 = 10,000백만원
- 경영개선자금/시설개선자금 지원 = 10,000백만원
- 위원회 보조금 = 50백만원
- 지역상권 실태조사 30,000천원 × 2회 = 60백만원
- 토론회 10,000천원 × 2회 = 20백만원
-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1식 = 100백만원
- 위원회의수당 100천원 × 20명 × 6회 = 12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경제수도추진본부 생활경제과 행정6급 원수열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입							
	소계						
세출		5,071	20,242	20,242	20,242	20,242	86,039
	소계	5,071	20,242	20,242	20,242	20,242	86,039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5,071	20,242	20,242	20,242	20,242	86,039
	일반회계	5,071	20,242	20,242	20,242	20,242	86,039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